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78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중소기업청장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 이유

대학생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내 센터면적의 일부분을 재학생의 공동창업 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와 기타 창업보육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학생창업 촉진을 위한 공동 창업공간 허용 (안 제2조)

대학내에 위치한 보육센터에 센터면적의 일부분을 5명 이상 재학생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나.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범위 확대 및 전문매니저 경력과 자격 구체화 (안 제6조, 안 제19조)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전문인력에 포함하고,

벤처기업 유경험자\*도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

\*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자

다. 창업보육센터정보화시스템(비아이넷) 관리 관련 (안 제22조)

창업보육센터 비아이넷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평가 관련 (안 제22조의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입법예고, '13.10.7)에서 정한 운영실적 평가 기준을 명시

마.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평가 관련 (안 제22조의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입법예고, '13.10.7)에서 정한 운영실적 평가 기준을 명시

바. 기타 (안 부칙 제 2조)

요령 구성체계 상 부자연스러운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여 체계를 일원화하고 반복적 용어\*\*의 단순화

\* 용어에 대한 정의를 요령 제2조(정의)로 일원화 : 전문매니저 정의

\*\* 반복적용어의 정비 : 전문매니저 → 매니저

### 3. 의견제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4413, Fax : 042-481-3972)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p><b>제2조(정의)</b> 1.~11. (생략) 12. &lt;신설&gt;</p> <p>13. &lt;신설&gt;</p>	<p><b>제2조(정의)</b> 1.~11. (현행과 같음) 12. “학생창업공간”이란 대학 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가 재학생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센터면적의 일부분을 5명 이상의 재학생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13. 전문매니저(이하‘매니저’라 한다)는 창업진흥원 또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다만,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육센터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니저로 인정한다. 가.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 센터 3년이상 근무 또는 상근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이상인 자 나. 학사학위소지자로 창업보육센터 2년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이상인 자 다.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창업보육센터 근무 경력 1년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이상인 자 라.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 소지자 마. 전문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p>
<p><b>제6조(전문인력) ①</b> (생략) 1.~3. 생략 4. &lt;신설&gt;</p> <p>② (생략)</p>	<p><b>제6조(전문인력) ①</b>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및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② (현행과 같음)</p>
<p><b>제11조(보조금 내용 및 규모) ① ~ ④</b>(생략) ⑤ -----</p>	<p><b>제11조(보조금 내용 및 규모) ① ~ ④</b> (현행과 같음)</p>

개정 전	개정 후
<p>1. 보육센터 <u>전문 매니저</u>의 인건비 및 성과인센티브</p> <p>4.~5.(생략)</p> <p>⑥~⑧ (생략)</p>	<p>⑤ -----</p> <p>1. ----<u>매니저</u>-----</p> <p>-----</p> <p>4.~5.(현행과 같음)</p> <p>⑥~⑧ (현행과 같음)</p>
<p><b>제19조(전문 매니저)</b>①사업자는 보육센터내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u>전문 매니저</u>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업자는 <u>전문 매니저</u>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u>전문 매니저</u>는 창업진흥원이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u>창업보육전문매니저</u>”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다만,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육센터에서 <u>매니저</u>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전문 매니저</u>로 인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문학사학위소지자</u>로 센터 3년이상 근무 또는 상근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이상인 자</li> <li>2. 학사학위소지자로 창업보육센터 2년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이상인 자</li> <li>3.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창업보육센터 근무 경력 1년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이상인 자</li> <li>4.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 소지자</li> <li>5.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u>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u></li> </ol> <p>③<u>전문 매니저</u>는 입주자의 자금유치,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야 한다.</p> <p>④지방정장은 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영능력 평가 시 <u>전문 매니저 보유여부</u>, <u>매니저의 장기근무체제 및 실적</u>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p> <p>⑤ &lt;신설&gt;</p>	<p><b>제19조(전문 매니저)</b>①-----</p> <p>----- 매니저</p> <p>-----</p> <p><u>매니저</u>-----</p> <p>-----</p> <p>②&lt;삭제&gt;</p> <p>③<u>매니저</u>는 -----</p> <p>-----</p> <p>-----</p>

개정 전	개정 후
	<p>④----- -----매니저 -----</p> <p>⑤청장은 매니저를 보육센터 근무경력과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등급을 분류하여 매년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소속 매니저의 결원 발생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매니저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p> <p>1. (선입)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전입)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주입)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p>
<p>제22조(업무운영사항 등의 보고) ①~② (생략) ③ &lt;신설&gt;</p>	<p>제22조(업무운영사항 등의 보고) ①~② (현황과 같음) ③청장은 창업보육센터 비아이넷을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22조의 2 &lt;신설&gt;</p>	<p>제22조의 2(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등) 청장은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운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별표4의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가감점은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34조(인센티브 지원) 청장은 창업보육의 성과가 우수한 보육센터에 대해 다음 각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p> <p>1. (생략) 2. 센터장 및 전문 매니저 해외연수 지원 3. 센터장 및 전문 매니저에 대한 성과인센티브 지급</p>	<p>제34조(인센티브 지원) ----- ----- -----</p> <p>1. (현행과 같음) 2. ----- 매니저 ----- 3. ----- 매니저 ----- -----</p>
<p>부칙 제2조(제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제검토해야하는 기한은 2015년6월 30일까지로 한다.</p>	<p>부칙 제2조(제검토기한) ----- ----- ----- 기한은 2016년12월30일까지로 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b>부칙</b> <b>제3조(전문 매니저 인정)</b> 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으나 <u>전문 매니저</u> 로 인정받지 못한 자는 중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u>전문 매니저</u> 로 인정받을 수 있다.	<b>부칙</b> <b>제3조(매니저 인정)</b> ----- ----- ---매니저----- -----매니저-----
<b>별표4. &lt;신설&gt;</b>	<b>별표4. &lt;평가지표&gt;</b> (첨부 #1)

(첨부 #1)

**【별표 4】**

**< 평가지표 >**

구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인프라 (40)	인력(27)	센터장의 근무실적 및 전문성(7)	센터장 전담수행 여부	3
			센터장 장기근무 실적	4
		매니저 확보 및 전문성(20)	매니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수	6
			매니저 장기근무 실적	8
자금(5)	운영자금 확보(5)	매니저 확보 인원	6	
시설·장비 (8)	시설 확보(8)	운영자금 확보 실적	5	
		보육실 면적	4	
운영 (60)	창업보육 인프라 개선 의지 (23)	기관장의 관심 및 의지(2)	창업사업 직접 참여 횟수	2
		센터장의 관심 및 적극성(2)	워크샵 및 역량강화 교육 참석	2
		매니저의 전문성 강화(3)	매니저 교육 실적	3
		매니저의 처우개선(10)	매니저 인건비	6
		창업보육료 사용률(6)	매니저 성과 인센티브 지급여부	4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실적 (23)	시설 운영(7)	창업보육료의 창업보육사업 사용비율	6
			보육실 입주율	4
		입주기업 지원(16)	보육실 회전율	3
	입주·졸업기업 지원 성과 (14)		입주기업 성과(12)	사업화 지원 실적
		교육 지원 실적		6
		계속 입주기업 매출 증가율		2
		계속 입주기업 매출 증가액		2
		졸업기업 성과(2)	계속 입주기업 고용 증가율	3
	인증·지재권 발생 실적		2	
가감점	입주기업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여부, 부실운영 등에 따른 처분 건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	투자유치 성과	3	
		졸업기업 매출	1	
		졸업기업 고용	1	

〈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연 락 처	(042) 481 - 4413